

##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이영진\*

###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개발의 상업적 이용 개관
- III. 상업적 우주활동에 관한 법적 규제
- IV. 주요국가의 국내법적 규제의 검토
- V. 평가와 전망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론

일찍이 우주시대의 개막이래 국가나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UN을 중심으로 그러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왔다.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은 역시 우주기술을 선점한 몇몇 선도적 국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sup>1)</sup> 나아가 최근에 와서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주공간에서 인간과 로봇의 활동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현재 SpaceX와 Orbital Sciences와 같은 기업들은 NASA와의 계약 하에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상업용 화물 비행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Sierra Nevada Corporation과 같은 기업들 역시 ISS로 상업용 유인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ISS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인간의 달 착륙, 소행성의 광물 및 자원 추출 그리고 심지어 2018년에 발사될 것으로 계획된 인간의 화성 근접비행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가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상업화란 정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우주활동 사업을 민간소유 및 운영으로 이행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민간부문의 소유로부터 개시된

1) Dr. I. J. Ph. Diederisks - Verschoor & Dr. V.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3rd rev. ed.), 2008, p. 106.

2) Machael J. Listner, "International space law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e rules do apply", *The Space Review*, June 2013, p.1.

우주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 제 국가들에 의해 다수 채택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활동이 가장 먼저 활성화된 통신산업 분야로부터 우주보험이나 우주운송 등에 이르기까지 이는 우주조약 제6조의 원칙아래 반드시 평화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제반 민간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도 우주국제법 및 국내법상 규제가 철저히 요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법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상업화’의 의미는 대체로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국가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행의 국제우주법 체계는 사기업이 행하는 우주활동을 유효하게 감독하고 기업에게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는 우주공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현행 우주관계 조약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수단으로 상업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통신, 방송, 원격탐사, GPS 등 다양하게 실용화가 진전된 우주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각각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하는 법규칙의 정리를 행하여 우주조약 제1조와 양립하는, 우주경제개발을 규율하기 위한 법원칙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주활동 가운데 굳이 ‘상업화’ 활동에 관한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주의 상업적 이용 특히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내지 국내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와 계약, 보험 등 상업적 우주이용과 관련된 각종의 법적 문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시도되었다.

## II. 우주개발의 상업적 이용 개관

### 1. 상업적 이용의 의미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 현행의 우주관계조약 규정으로 충분히 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화’ 혹은 상업적 이용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우주개발을 통해 인간의 일상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한 이른바 우주의 실용화<sup>3)</sup> 단계에서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기술발전과 산업화에 있어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적 우주개발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초창기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사기업들을 보호 육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주로 안전보장상의 고려나 혹은 자국의 활동으로 인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인해 초기의 우주산업에 대해서 각국은 국가의 통제에 엄격하게 따르도록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도 학자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 가운데 특히 상업적 행위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여 일정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바탕위에서 우주의 이용을 행하는 주체의 성격,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상업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가 비교적 '상업적' 의미에 충실한 접근방법으로 생각된다.<sup>4)</sup>

미국의 입장은 '상업화'라고 하는 경우에 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는 대체로 사기업이 주체가 되어 우주활동에 종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sup>5)</sup> 1984년 당시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발표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국가정책」에 따르면 상업화란 민간부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 우주공간을 이용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영화'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진정한 상업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우주법의 관점에서 '상업적 이용' 개념을 굳이 들추어서 논의하는 의의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에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행 국제우주법 체제가 사기업이 행하는 우주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기업에게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3) 여기서 실용화라 함은 대체로 기상관측이나 우주통신, 방송, 비행관제, 지구자원탐사, 위치추적 시스템 등과 같은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우주물체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山本草二, "宇宙開發", 未來社會と法, 筑摩書房, 1976, p.16.

4) Silvestrov, Georgy, "The Notion of Space Commercialization", 33 Colloquium of International Outer Space, 1990, p.90. He Qizhi, "Legal Aspects of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15 Annals Air & Space Law, 1990. p.333.

5) 예컨대 1984년 제정된 미국의 '상업우주 발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업(Commercial) 혹은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는 용어의 내용도 민간기업에 대한 허가와 계속적 감독을 전제로 한 것이다.

6) National Policy on the Commercial Use of Space, The White House(July 20,1984). 龍澤邦彦 監修 「原典 宇宙法」,丸善 プラネット,1999, pp.336-337.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상업화=민영화’로 보고 우주관계조약의 해석여부에 따라 관할권의 구역밖 적용조정이 가능한지, 또한 국가의 관할권을 피하여 어느 국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업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의의는 우주공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여, 거기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를 찾아내려는 현행 우주관계조약의 자세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상업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방송, 원격탐사, GPS 등 다양한 실제적 이용을 통하여 진전된 우주의 개발활동에 대해 각각의 기능과 성질에 맞는 법규칙의 조정을 실시하여, 우주조약 제1조와 양립하는 우주의 경제개발을 규율하는 법원칙을 발견해내는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우주활동 내에 굳이 ‘상업적 이용’ 분야에 포함되는 비영역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지표로 ‘상업화’에 중사하면 충분하며 ‘민영화’ 여하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대의 국제법은 지금까지 무역, 통화, 자원관리, 추상화된 기술적인 영역으로서의 국제기구 등 각종의 다양한 기능적인 영역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우주활동에 있어서도 이미 우주통신·방송은 타 우주활동부문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우주공간이라는 구역의 나뉠의 법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간성을 배제하여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업무에 관한 고유의 국제법적 틀 속에서 구속을 받고 있다. 우주분야 이용에 있어서 우주통신 관련법의 공헌은 이러한 기능적 관할권능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주공간을 특정 국제공익을 실현하는 장으로 확립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sup>7)</sup>

장래의 우주법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후자의 입장에 서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우주관계조약이 상업적 이용에 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입장에 서서 분석해 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본다.<sup>8)</sup> 또한 우주개발의 진행과 더불어 발전하게된 상업화 문제에 있어서의 우선적 과제가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문의 목적을 여기에 중점을 두어 대체로 ‘상업화=민영화’로 간주하고 이후의 서술을 해나가기로 한다.

7) 山本草二, 宇宙通信の 國際法 -國際企業の 法形態として-, 第1編, 東京, 有信堂, 1991, p.57.

8) 青木節子, “宇宙の 商業利用”, 日本と 國際法 100年, 第2卷, 2002, p.247

## 2. 주요국가의 상업적 우주개발 추진현황

우주개발에 있어서 상업화문제는 우주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상업화를 통하여 우주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이미 위성통신설비의 상업적 이용과 기초설치비용이 항공공업생산의 53%에 달했다고 하며 그 상업적 수입은 처음으로 정부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9)</sup> 실제로 상업적 우주산업은 주로 위성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1996년과 비교해 볼 때 2005년에는 그 규모면에서 3배가 되었고 이는 888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상업위성 부문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위성서비스 분야는 상업적 우주 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업화와 관련한 우주기술 개발은 종래의 지적 호기심 충족 수준을 넘어 21세기 첨단우주산업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더 경제적 파급효과가 관심에 대상이 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우주 비즈니스로 전환 되면서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주산업은 21세기에 들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한 분야가 된 것이다.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700억불('99년)로 평가되었고, 이후 연 10%이상 성장 추세를 보임으로써 2010년에는 약 4,400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sup>10)</sup>

우주에서 상업적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통신사업분야로서 우주정보통신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전략 핵심기술이다. 위성통신사업은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중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하면서 또한 가장 수익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우주선진국들이 21세기 국가안보전략으로 위성발사서비스산업과 더불어 위성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관련기술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1)</sup>

또한 개인도 이 분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점증하는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있어서는 강대국간 경쟁의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으나, 특히

9) 윤옥해, “아세아우주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법률문제”, [www.cnsa.gov.cn](http://www.cnsa.gov.cn).

10) [http:// web1.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http://web1.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

11)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

냉전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군사 기술의 상용으로의 전환은 우주개발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상업화는 모든 국가에게 우주기술의 이익을 보다 광범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우주개발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법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아직 본국의 우주입법 제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최근에 와서야 한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점차 법적 체제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국가의 상업적 우주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의 동향을 간략히 개관해 보고자 한다.

세계 우주산업은 G7 선진국들의 독무대라 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는데 2006년말 통계기준에 의하면 세계 우주산업 생산액의 80% 이상을 이들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우주산업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투자 패턴이 다소 다른데, 미국은 정부와 기업의 투자목표를 확실히 구분해 NASA는 우주탐험을 비롯한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록히드 마틴 등 민간기업은 상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정부가 일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상업적 활동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기업이 우주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보조금 지원에 의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성분야에 있어서 전체 위성발사대수 중에서 상업위성(통신 및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격히 높는데, 이는 군수부문 축소 및 민간분야의 발전에 따른 우주분야의 상업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7년 구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국가 최우선과제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직속의 NASA(항공우주국)와 DOD(국방성)가 우주산업<sup>12)</sup>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우주산업은 크게 방송통신 위성 및 관측위성 등 위성체 제조산업과 우주발사체 제조 및 운용산업 그리고 위성체와 우주발사체를 이용 내지 활용하는 위성서비스 산업 등 세가지로 분류되는 바 미국

12) 우주산업이라 함은 위성이나 발사체에 소요되는 부품이나 서브시스템 수준의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시스템 자체와 방송, 통신, 영상자료 획득 등 위성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의 산업이다.

의 경우 일찍이 NASA(국가항공우주국)와 DOD(국방성) 등의 지원에 힘입어 상업용 인공위성 시장에 있어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본은 실용위성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JAXA를 중심으로 총리부에 우주개발위원회를 두어 우주개발 육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위성발사 능력을 갖췄으며, 지구정지궤도상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세 번째 국가이다. 인공위성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경우처럼 전 부문에 걸친 고른 위성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데, 미화 약 25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1994년 정지궤도용 장거리 발사체인 'H2' 개발 후 그 파생형인 'H2-a'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미 휴즈(Hughes)사로부터 약 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10대의 발사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상업적 이용시장에 진입하였다.<sup>13)</sup>

러시아(구소련)는 전 세계 위성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위성 최대 발사국으로 최근까지 위성 발사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견지하였던 바 이중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위성은 과학실험위성으로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의 우주개발이 상업용보다는 과학분야 및 기술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우주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세기까지 발사된 34개 위성 중 과학, 실험위성이 전체의 67.6%인 23개, 상업용 통신, 방송위성은 11개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용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민수용 발사체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위성을 발사시켜주는 '장정 시리즈'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미국이나 유럽연합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하여 '장정' 시리즈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으며, 이후 발사체 수주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데 범세계적인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인 이리둡 사업에 소요되는 66대의 위성중 22대가 장정에 실려 발사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sup>14)</sup>

프랑스는 유럽국가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주개발을 주도하면서 유럽 17개국 연합의 ESA(유럽우주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의 43~4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ESA와 공동으로 상업용 위성의 전문발사업체인 아리안사를 설립하여

1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

14) Ibidem.



세계 상업용발사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면서 미국 업체들을 압도하기도 하였던 바 여기에 현재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나 보잉 등도 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CNES(국립우주개발센터)가 우주관련 예산의 입안 집행, 관련기업 지원, 위성시스템 운용 등을 담당하며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을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한다. 프랑스 우주산업 육성의 가장 큰 특징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군을 통합하여 CNES로 집중, 우주개발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CNES는 연구기관의 역할 외에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및 시장확보를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여 로켓, 위성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우주의 상업적 이용 대열에 합류하면서 1994년 극궤도 발사체를 개발한 데 이어 지구정지궤도 발사체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무인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호’ 발사, INSAT 위성의 발사와 상업적 이용 등을 통해 우주의 개발과 경제적 이용에 일대 도약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sup>15)</sup>

한국에서는 2006년 7월 우리기술주도로 제작한 고정밀 첨단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KOMPSAT-2)를 성공리에 발사한 바 있다. 이 아리랑 2호에는 1m급 해상도를 가진 다중대역위성카메라(MSC)가 탑재되어 있는데 한국은 2008년이래 ESA 및 아시아국가에 그것을 통한 위성영상판매로 3년동안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주과학기술의 성공 이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상업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주기술의 상업적 이용은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국가위상 제고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성의 개발로 2025년까지의 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3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7만 7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주산업이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할 핵심부문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5년 1월 일본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앞으로 일본을 먹여 살릴 꿈의 10대 기술’ 중에 우주산업 분야가 세 가지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다. 이제 장차 다가오는 우주상업시대에는

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R&D Information, 2013, 국가별 주요항공우주프로그램 참조.

16) [http:// web1.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http://web1.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

정부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은 반도체 신화 등 IT강국을 이룩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 우주강국을 이루는데도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합적으로 우주의 상업화시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평가

최근 세계의 우주산업은 경제적 사정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방위·첩보 등 군수 부문의 수요 위축과 정부의 우주관련 예산 삭감으로 주춤해 졌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이후 화성탐사를 위해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크게 증액하면서 연간 2.5%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우주산업 육성외지에 힘입어 우주개발 추진기구의 개편과 관련 국내법규의 정비 등을 거치면서 연평균 1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의 상업적 이용은 통신수요의 지속적 확대, 우주탐사활동의 다양화, 우주 과학실험 활성화, 우주정거장 설치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통신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궤도에서 여러 인공위성을 운용함으로써 음질 등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있는 관계로 최근의 인공위성 시장은 종래의 지구정지궤도용 방송통신위성 위주에서 저궤도 이동통신용 위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저궤도 이동통신용 인공위성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상업적 우주활동에 관한 법적 규제

### 1. 우주관련 조약과 사기업활동의 규율

UN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UN COPUOS)가 작성해 왔던 각종 우주관계 조약들에서는 우주공간이나 천체에서의 활동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여 당해 공간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그기에 맞게 제반 활동을 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은 전 인류에게

개방된 활동영역에 속하며<sup>17)</sup> 국가영유권의 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sup>18)</sup> 여기서의 활동개념속에는 천연자원의 채굴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 우주라고 하는 국제공역에서의 활동형태에 관해서는 탐사와 이용, 과학조사 및 연구 등을 들 수 있고<sup>19)</sup> 우주개발(space exploitation)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공간이나 천체에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물권(物權)적 권리나 천연자원의 개발과 우주제조업에 종사하기위한 요건과 그로부터 취득하는 특정이익을 국제사회에 분배하는 원칙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sup>20)</sup> 이는 말하자면 우주의 경제적 개발에 관한 규칙의 도입을 회피하려는 국제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주조약의 규정속에 비정부 당사자도 우주활동의 주체로 명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사적 기업의 우주활동도 조약의 적용범위에 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sup>21)</sup> 따라서 여기서 개발개념의 미분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장차 국제사회의 논의에 맡겨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2)</sup> 물론 이 경우에도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속지적 관할권 행사는 조약에 의거 금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자국이나 그 국민의 우주활동에 관해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국의 속인적 관할권의 적용을 통해 우주이용에 있어서의 질서유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중심적 조약규정은 우주조약 제6조에 해당되는데 동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활동(national activities)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지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이

17) Outer Space Treaty (1967), Art. 1.

18) Outer Space Treaty (1967), Art. 2.

18) Outer Space Treaty (1967), Art. 1, 3 & 9.

Traa-Engelman, H. I. van,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1993, p. 21.

20) 이와 관련된 주장이 달협정에 관해서도 반드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대부분의 우주 활동국이 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밖의 4개 조약을 전제로 한 논의이다.

21) Traa-Engelman, *op. cit.*, pp. 22-24.

22) 山本草二, “宇宙法における開發概念”, 國際法外交雜誌, 69권 4·5·6호, 1971, 285-311.

조약에 의한 책임은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이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조항은 우선 그 전반부에서 전통적인 국제책임법의 요건을 답습하여 상업적 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국내법상 지위에 관계치 아니하고 누구에 의해 수행되든, 정부기관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에 수반되는 국제위법행위의 책임을 당해국가에 일원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자국의 비정부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우주조약 내용에 합치되도록 그 활동 수행을 확보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관계국은 그 책임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비정부기관의 우주활동에 관하여는 사전허가와 계속적인 감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허가나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각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렇기는 하나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우주물체의 발사로부터 야기되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그 우주물체의 발사국이다(동 제7조). 책임주체로서의 발사국에 관하여 책임협약 제1조는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우주물체의 발사를 야기하는 국가 및 우주물체가 발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발사야기’(procure)는 발사를 위해서 자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발사를 의뢰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시설 가운데는 외국에 위치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주영역, 공해 또는 해저, 기타 국가관할을 벗어나는 기타 지역을 포함하나 착륙시설(landing facilities)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발사국’의 개념상 국가나 비정부단체를 포함하여 그 활동에 기한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인 국가의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발사를 수행하는 국가, 발사를 의뢰하는 국가, 발사시설이 위치하는 국가, 발사시설을 소유하는 국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네 국가는 모두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따라서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그 개인은 이들 가운데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손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주물체에 관할권이나 관리를 행하는 주체는 등록국이다(우주조약 8조). 둘 또는 그 이상의 발사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국가가 공동의 결정에 의거하여 등록국이 된다. 또한 동 조항의 두번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계당사국의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우주조약의 기초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으나 자국의 활동과 관계당사국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학설도 분분하여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sup>23)</sup>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사국 개념 자체가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두고 우주조약 9조(자국 또는 자국민에 의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적국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sup>24)</sup> 외에 관할권의 행사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등록국이 가장 관계당사국에 적합하다는 주장에서부터<sup>25)</sup> 나아가 발사국, 등록국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관할권이나 관리를 행하는 국가, 기업의 본점소재지국, 우주물체 제조국, 우주물체 소유국 그리고 우주물체를 관리하는 국가 등 모두가 관계당사국이 된다고 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sup>26)</sup>

결국 어느 범위의 사기업에게 허가를 부여하고 감독을 하느냐의 문제는 각 국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개별 국내법상 당해우주활동 수행에 관해 허가취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가 관계당사국이 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이나 그 밖의 조치들을 통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영화라는 말이 없던 시대에 제정된 법은 날로 증대되는 상업화로 야기되는 잠재적 문제들을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주의 국제적,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상업적 발사 서비스와 그 서비스의 책임 소재, 지적 재산권, 보험, 제조물생산책임 보험, 그리고 물질처리(materials processing) 등과 같은 문제들의 법적 처리에 관한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이것은 현재 우주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초안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기도 한 부분이다.

민간기업에 의한 우주개발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신위성서비스 분야가 시장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하나, 위성발사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상업화, 민간화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민간기업이 국가의 발사시설이나 역무의 잉여부분을 임대하기도 하고 발사기기의 개발을 수행하기도 하며, 독자적으로 발사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저자원굴착용 해상 platform을 개조하여 이동용 발사시설 실험 및 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23) Boeckstiegel, Karl-Heinz, "The Term "Appropriate State" in International Space Law" 37 Colloq. L. Outer Space, 1994, p.78.

24) Gorove, Stephen, "Liability in Space Law : An Overview", 8 Annals Air & Space Law, 1983, p.377.

25) Reijnen, Bess,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in Space - in Europe" 33 Colloq. L. Outer Space, 1990, p.70.

26) Bourely, Michel,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29 Colloq. L. Outer Space, 1986, p.157.

이와 같은 민간발사활동의 급속한 전개는 그에 대응하는 법규칙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감안하여 상업적 발사활동의 국제적 및 국내적인 규제 제도와 발사계약 및 보험 등의 문제를 분석해 보고 이어서 우주개발과 상업화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국가군에서 지금까지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법규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몇몇 주요국가들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간략하게 요약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자국법상 규제를 행하고 있는지 등 국가관할권의 저축 또는 공백을 피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상업적 발사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제

### 가. 우주발사의 허가 및 감독

현행국제우주법상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사활동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상업적활동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우주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국의 민간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발사를 행할 경우(이 경우 발사국으로서) 또는 국제영역(어느 국가의 관할하에도 있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발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서도 규율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본바와 같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 집중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의 감독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sup>27)</sup>

우주 발사에 관한 국내적 면허발행 및 감독기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DOT, 특히 그 OCST이다. 영국에서는 産業장관, 남아메리카에서는 남아메리카宇宙問題評議會, 러시아에서는 RSA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허가를 수여하고 국가우주활동위원회가 감독, 관리의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의 감독기관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발사는 대외적인 업무거래(노무 혹은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페이로드(위성 및 기타 탑재물)의 규제와 분리하여 생각한다. ③ 항공우주 관련기업의 상업우주발사산업으로의 참가와 동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행하여지도록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8)</sup>

27) Outer Space Treaty (1967), Art. 6.

28) 龍澤邦彦, 宇宙法 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研究セクタ-,2000, p.217.

허가의 요건은 각국이 대체로 비슷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공공의 위생 및 안전의 보호, 재산의 안전, 국가의 안전보장, 국제적 의무에의 적합성, 평화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 등이다. 우주상업화를 촉진함에 있어 정책목적을 갖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허가의 필요조건을 우주활동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공공이익에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탑재물의 안전성체크 및 허가의 검토는 발사의 그것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에 의해 행하여지지만, 타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되어 있다. 이 차이는 우주활동의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나. 발사계약

### 1) 발사계약의 법적 성질

발사계약은 이른바 가입계약은 아니다. 그렇지만 발사기관, 예를 들면 NASA 등은 일반적으로 기준협정을 기초로 하여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발사기의 제조기간 및 발사계획을 위하여 발사계약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고, 동시에 조정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다만, 발사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사계약에 있어서 안정성과 엄격함이 도입될 것이며 보다 종래의 계약에 가까워질 것이다.

발사계약은 발사업무의 공급을 행함에 있어 독특한 상법상 계약의 일종이다. 발사계약은 국내계약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계약인가? 이것이 문제로 되는 것은, 계약의 불비(不備)를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당사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계약이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흔히 미비하기 쉬운 법규제(국제법적 규제 또는 단독적인 혹은 배분적인 각국의 국내법)를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발사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하는 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① 이런 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실시장소가 국제영역인 우주공간이고 우주법만에 의해 규율된다. ② 발사의 실시는 자국이외의 국가 기업에 의해 제조된 발사기의 사용, 국제적인 기술팀의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및 기타 국가 기업의 특허권의 사용, 국적이 다른 기업에 의한 컨소시엄의 형성, 국제적인 기술이전, 국제적인 자금의 이전 등 복수의 법체계에 관계되는 사실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발사계약은 필연적으로 복수의 국가의 법체계와 연결점을 갖고 있다. 당사자가 그 의지에 의해, 선호하지 않은 법을 기피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sup>29)</sup> 이에 대하여 발사계약은 기본적으로 국내계약이라고 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① 발사 계약이란 일개 국가의 발사업무공급자와 체결하는 상법상의 계약이고, 어느 것이든지 한 국가에 묶어져 있다. ② 발사계약을 행하는 발사업무공급자의 의무는 통상 제1단의 발사기엔진의 점화의 시점에서 종료한다.<sup>30)</sup>

국제상법상의 국제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다른 국적을 갖는 것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재산 및 가치의 이동을 생기게 하고, 계약의 연결요소(예를 들면 발사시설, 발사실시영역, 발사기, 발사업무, 업무실시인, 업무의뢰인 등)가 복수의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것 및 국제거래상의 이익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발사계약이 일반적으로 국내계약 혹은 국제계약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개개의 발사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발사계약자간의 의무

발사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발사업무공급자이다. 고객이라는 것은, ‘우주물체 또는 위성의 최종적인 소유자 혹은 운용자이든지 아니면 우주물체 또는 위성을 최종적인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 의한 이용을 위하여 궤도에 투입하는 자’를 말한다.<sup>31)</sup> 고객 중에는 turn-key형 계약, 말하자면 위성제조업자가 위성의 제조에서 궤도상에서의 초기기능시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것에 수반하는 위성손해의 리스크를 인수하여 궤도상에서의 운용상태로 위성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계약의 경우 위성제조업자도 포함된다. 발사업무공급자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 상업발사업무를 공급하는 것 또는 당해 업무의 발사기를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국내법령(예를 들면, 수출무역관리법규, 상업우주발사법 등)에 의거 면허를 교부한 단체, 또는 대리인 혹은 이것을 위해 행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고객의 의무

발사주문은 발사 3~4년 전까지 고객에 의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주문에 의해 발사기의 이송일정에 맞추어 지급할 명세서가 준비된다. 발사계약은 통상 2단계로 나눈다.

29) Leopold Peyrefitte, "Droit de l'espace", *Precis Dalloz*, 1993, pp. 103-105.

30) H. Batiffol et P. Lagarde, "Droit international prive", 1983, *LGDJ. T. II*, p. 274-277.

31) Memorandum of Agreemen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commercial launch services between U.S.A. and P.R.C.(1995), ANNEX 1: Art. 3.



제1단계는 고객이 발사가능기간내의 발사예정일의 예약을 한다. 이 예약은 고객이 발사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의 지급을 필요로 한다. 제2단계에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한다. 발사업무공급자가 발사기제조업자와 체결하는 제조계약에 있어서는 고객은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 계약은 발사계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탑재물의 제조계약도 동일하다. 동 계약은 원칙으로서 고객이 행하는 것이고, 발사업무공급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확정계약은 당사자가 관계당국의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고객은 발사업무공급자에게 발사예정의 연기를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됐건, 결정된 발사기간 및 발사가능시간대와 함께 발사일을 연기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고객에 의해 요청된 연기의 합계기간이 일정기간(예를 들면, 아리안 스페이스사를 비롯한 많은 발사업무공급자의 발사계약에서는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고객은 그 연기에 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2)</sup> 당해 금액은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연기의 통고가 늦게 될수록 지장이 크게 때문에 연기의 보상액은 증대하고, 발사계약의 재교섭이라는 결과로 된다. 발사시간의 직전(제3단계에로의 탑재물의 적재 또는 카운트다운의 단계)에서의 연기요청은 연기료라는 별개의 추가요금이 고객에게 부과된다.<sup>33)</sup>

고객은 발사계약에 정해진 당사자의무의 이행 및 각각의 기술상 의무의 이행의 감독 및 조정을 위하여, 당해 계약에 있어서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조정자 및 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약조정자를 각 한명씩 지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약이행 중의 기술상 또는 계약상의 문제 및 일상의 관리로 기인하는 기타 문제는 이러한 조정자가 해결한다.

#### 나) 발사업무공급자의 의무

발사업무공급자는 발사계약에 명기된 발사업무 및 고객에 의해 주문된 기타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4)</sup>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발사업무공급자와 발사기제조업자가 행하는 발사기의 조달, 발사기의 운용업무, 미션분석, 우주기설계의 확인, 기타 종류의 시험 등이다.

32) Agreement for the launching into geostationary transfer orbit of satellite by an Ariane launch vehicle, Art.11.2.1.

33) Ibid. Art. 11.22.

34) Ibid. Art. 4. 2.

예를 들면 아리안스페이스 발사계약 제4.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리안스페이스사는 발사된 후의 발사기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사가 행해지면 발사업무는 아리안스페이스사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계약중의 '발사'라는 것은 발사기의 제1단 엔진의 점화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일단 발사업무의 종료가 된다. 왜냐하면, 발사업무공급자는 발사후 발사기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권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마틴 마리에타와 Intelsat의 발사계약 제5조 5항에 의하면, 마틴 마리에타사에 의한 발사업무는 Titan3의 고체 로켓모터 점화시점에서 종료한다. 발사후의 발사기의 감시는 비행 경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추적관제 시스템에 맡기기 때문에, 발사후의 사고는 발사업무공급자의 계약의무의 위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sup>35)</sup>

발사업무공급자도 발사를 연기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아리안스페이스사는, ① 불가항력, ② 동사 또는 그 제휴자가 안전 또는 신뢰성에 관해 만족이 가는 조건에 의해 발사의 실시를 방해하는 기술상 문제에 직면한 경우, ③ 대체발사 또는 연기의 경우 그 미션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학적 위성의 발사를 행하자고 요구된 경우, ④ 아리안스페이스사에 의한 연기를 위하여 고객의 위성보다 빠른 발사기간 또는 발사가능시간대를 갖고 있는 위성의 발사예정을 변경할 경우 발사를 연기할 권리를 갖는다.<sup>36)</sup> 연기가 발사업무공급자로 기인하는 경우 당해 공급자는 당연히 보생책임을 진다. 그러나 통상 발사연기의 경우, 발사업무공급자의 책임의 정도는 고객의 그것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다.

다른 발사계약(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협정 제8조, 마틴 마리에타사와 Intelsat간의 협정 제6조)에 있어서는 발사로 기인하는 사고에 의한 위성의 파괴, 분리실패 및 예정수명의 대폭 감소 등의 경우, 고객에 대하여 대체발사요청권을 인정하고 고객의 선택에 의한, 대체발사 또는 발사비 변제의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은 발사에 계속하여 발사미션 또는 위성미션의 어느 것이 어떤 이유로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사업무공급자에게 대체발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sup>37)</sup> 발사업무공급자는 통상 고객에 의한 유상 제도로의 가입을 조건으로하여 대체발사를 보증하고 또는 발사비의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발사업무공급자는, 발사리스크 보증으로서 실패의 규모에 비례한 보증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35) P.L.Meridith and G.S.Robinson, "Space Law : A Case Study for the Practioner", Nijhoff. p. 320.

36) Supra note 31), Art. 9 &11. 3.

37) Ibid. Art. 13. 1.

다음의 것으로 기인하는 실패는 발사리스크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는 ① (전쟁선언이 행해졌는지 않는지에 불문하고) 전쟁, 침략, 적대행위, 내전, 반란, 혁명, 폭동, 계엄령, 군사규칙, 합법적인 정부의 전복 또는 전복의 시도, ② 어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압수, ③ 핵분열, 핵융합, 유사한 반응, 방사성에너지 또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동력원의 사용, ④ 위성파괴무기, ⑤ 우주환경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이외의 어떤 종류의 방사능오염, ⑥ 고객의 과실위법행위 등을 말한다.<sup>38)</sup>

#### 다. 책임부담과 보험

발사로 기인하는 손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손해가 있다. 우주손해배상협약도 우주조약 제7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손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조약은 개인의 레벨은 아니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은 손해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민간기업의 보험에 의해 커버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민간기업과 정부의 쌍방을 고소하고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의한 보증제시에 앞서 민간기업이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한다.

##### 1)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상호포기원칙

리스크분배의 방식으로서 많은 발사계약에 있어서 발사실패의 경우 각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와 함께 하청계약자(발사활동에 관계되는가 아닌가는 상관없다)를 포함한 발사참가자간(미국에서는 당사간이라는 의미의 “interparty”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interparticipan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의 원칙이 삽입되는 것이 보통이다.<sup>39)</sup> 예를 들면 아리안스페이스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의무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계약에 의해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업무 및 고객의 기술적인 책임의 하자,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기인하는 아리안스페이스사 또는 고객의 배상책임은 계약의 종료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있어서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밖의 구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있다. 각 당사자는 자기 또는 그 제휴자가 입은, 어느쪽이든 계약과의 관련 혹은 계약의 이행에

38) Ibid. Annex4, Art. 2. 1. 2.

39) P.L.Meredith and G.S.Robinson, op.cit., pp. 320~321.

즈음하여 생긴, 재산의 모든 멸실 또는 손상 및 신체의 상해, 동시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어떤가를 불문하고 이 멸실, 손상(사망을 포함한다) 및 신체의 상해 그리고 발사미션의 실패 및 위성미션의 실패 등 모든 결과를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과실책임을 지지않을 것, 대위변제를 행하지 않을 것, 당사자간에서의 배상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는 형태로 동의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그 제휴자에 대하여 어떤 이유든지 이것을 위하여 청구 또는 재판, 중재 또는 행정상의 절차이든지 소송절차를 시작할 권리를 포기한다.<sup>40)</sup>

그리고 미국은 상업우주발사법 제70112조(4)(b)에 의해 동법에 의해 교부된 또는 양도된 면허는 발사업무에 관계되는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고객 및 고객의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와의 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를 행하는 면허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요구내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크분배 방식으로서 이것 외에 발사기 자체의 성능에 관한 보증거부(disclaimers if warranty)도 발사업무공급자가 발사기제조자인 경우에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제한조항이 손해배상청구 상호포기의 원칙의 적용외의 사항, 예를 들면 고객의 일실이익 및 기타 중대한 이익에 관한 발사업무공급자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된다.<sup>41)</sup>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사례로 *Martin Marietta v. INTELSAT* 사건을 간략히 분석해 본다.

미국에서는 1987년 발사계약에 의해 *Martin Marietta*사에 의한 1990년 3월 14일의 *Intelsat* 위성발사의 실패(제2호 로켓이 위성과 접촉한 *Peregee Kick Motor*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인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상호포기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Intelsat*가 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① 일반적인 불법행위(*tort claims in general*), ②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 ③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문제로 되었다.<sup>42)</sup>

①에 관해서는, 판결에 의하면 *Martin Marietta*사 및 *Intelsat*의 쌍방은 적절하게 상호간 리스크를 분배하면서도 의무를 정할 수 있는, 평등한 거래능력을 갖고 고도의 지식을 소유한 당사자이라는 것이 명료하고, 양 당사자는 계약중의 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의 완전한 범위를 정했다고 결론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행의

40) *Supra. note 31*), Art. 14.1.

41) 龍澤邦彦, *supra. note 27*), p.226.

42) *Martin Marietta v. INTELSAT*, 763 F. Supp. 1327 (D. Md. 1991).

이하에서 기술한 것은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3개 항목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논점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의무를 초월하여 **Martin Marietta**사는 계약을 고의적으로 약의 혹은 사기에 의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무부담이외 **Intelsat**에 대해 이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주법(州法)에 의해 부과된 일반적인 불법행위의무 뿐만 아니라 합의된 계약사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이 당사자 계약관계와는 별도로 불법행위상의 상당한 주의의무(**due care**)를 창설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표시에 관한 이 불법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는 특히 무방비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부과된다. 말하자면 이 의무는 일방이 큰 개인적 신뢰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 변호사, 건축가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환자 또는 고객과의 거래 문맥에 있어서 부과된다. 이 특별한 신뢰관계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 **Intelsat**는 계약의 대상에 대해 정통하지 못했거나 아무런 지식을 갖지 않은 류의 소비자는 아니다. 법원은 어떤 상황도 **Martin Marietta**사에 대하여 표시를 행하는 것에 맞추어 상당한 주의를 행하는, 계약외의 불법행위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Intelsat**는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에 의해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에 관해서 판결은 통상적으로 중과실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계약에 의해 포기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정책을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 사례의 특별한 문맥에 있어서는 중과실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포기의 강제가 공공정책에 의해 강하게 지시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의회가 현실적으로 입법에 의해 양 당사자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손실리스크를 부담하는 취지인 계약상의 포기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의거한 공공정책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중국의 공공정책은 면허 교부된 우주발사공급자의 업무를 이용하는 자들이 자신의 리스크에 따라서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2) 보험

제3자보험을 드는 것은 통상 법률 및 기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된다. 미국에 있어서는 전술한 것처럼 상업우주발사법에 의해 제3자 및 정부자산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지워져 있다. 보험액은 국가나 로켓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sup>43)</sup> 아리안스페이스사는 최고 4억 프랑스로, 그리고 마틴 마리에타사는 Titan로켓에 의한 발사에 관해 2150만 달러의 보험을 들었다. 소형의 저궤도로켓은 100만달러 정도의 보험을 들었다.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발사계약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 중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 완전하게, 자기 또는 자기의 제휴자가 일으킨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제3자가 입은 멸실, 손상 또는 신체의 상해(사망을 포함함)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른 당사자에 의해 야기된 멸실, 손상 또는 신체의 상해(사망을 포함함)를 이유로 제3자에 의한 한 당사자 또는 그 제휴자에 대한 사법상, 중재상, 행정상 및 기타 소송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는 당해 한 당사자에 배상하면 면책되게 된다. 아리안스페이스사는 발사에 관해 통합된 우주물체 또는 그 부품에 의해 야기된 제3자의 재산상 손해 및 신체의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해 자신 및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쪽이든지 추가비용을 내고 사건별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험의 적용은 발사일 현재에 실시되고, 36개월 또는 통합된 우주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궤도에 머물러있는 기간동안 어느쪽이든지 짧은 기간 계속된다.<sup>44)</sup> 아리안스페이스사는 전기의 기간 중 통합된 우주물체 또는 그 부품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일으킨 재산의 손해 및 신체의 상해에서 당해 보험증권에 의해 보전된 금액을 초월하는 것에 관하여 모든 배상책임을 이행한다. 이 보험증권의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고객이 자기의 위성 또는 그 부품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야기한 이러한 손해 및 손상에 관해 모든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sup>45)</sup>

43) Masahiko Sato, The Japanese Legal Framework; Third Party Liability Resulting from NASDA Launch Activities, IISL-98-IISL. 2. 05, pp. 2~3.

44) Supra. note 31), Art. 15, 1&2.

45) Supra. note 31), Art. 15, 3.

## IV. 주요국가의 국내법적 규제의 검토

### 1. 미국 국내법의 검토

#### 가. 우주조약과 연방헌법

미국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된 ‘상업우주발사법’과 같은 중요한 법적 배경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연방법의 일부인 국제우주법과 상업적 우주발사법의 관계를 살펴본다. 종래에 상업적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이는 연방정부에의 권력 위임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 아래서 개인 시민에게 자유로운 활동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상업적 우주활동을 금지하거나 혹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오해는 헌법하의 연방 권력위임과 미국법에서 조약의 법적 효력을 결부시킴으로써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상업적 우주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오해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권리장전 수정 제10조를 인용하여 합리화할 수 있겠는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거나 헌법에 의해 여러 주에 금지되어있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에게 유보된다”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수정 제10조가 말하는 바는 만일 헌법에 의해 특정 권한이 연방정부에 분명하게 위임되지 않았다면 권한은 여러 주나 국민들이 행사하도록 유보된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을 요약하면 일부 상업적 우주활동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과 같은 개인적 법적 실체들이 상업적 우주활동은 헌법아래 연방정부로 권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방해 없이 수정 제10조하에 상업적 우주활동을 임의로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으로 추론된다.<sup>46)</sup> 이들 입장의 기반은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 우주법이 미국정부에만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있다. 그러한 추론은 비준 조약의 법적 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미국 헌법 6조의 일부이다.

“이 헌법 및 헌법에 의해 제정된 연방 법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해 체결된 또는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주의 법관은 이에 구속되며, 어느

46) Machael J. Listner, “International space law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e rules do apply”, *The Space Review*, June 2013, p.6.

주의 헌법 또는 법률과 어긋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이는 미국이 우주조약이나 그와 동열에 있는 국제조약을 비준할 때 이러한 조약들의 조항은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법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우주조약과 같은 조약의 조항들을 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진념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사법권하의 개인 시민도 물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점은 우주국제법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의 국내법적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주조약 제6조는 우주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정부가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활동을 허가하는 책임을 지니며, 그들이 우주조약과 국제법에 일반적으로 순응할 것을 분명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비준한 조약으로서의 우주조약의 지위는 미국 헌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최고법이 된다. 우주조약에 의해 미국으로 위임된 권한과 의무를 고려하여 의회는 상업적 발사 활동을 명확하게 다루는 일련의 연방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1984년 제정(1988년, 2004년 등 개정)되어 ‘상업우주발사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51 U.S.C §§ 50901-50923으로 성문화된 미국 법령 제 509장 51편에 의거, 미국 연방정부는 교통부를 통해 상업적 우주활동을 허가하고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sup>47)</sup>

제 509장하에서 상업적 우주활동을 감독할 미국 교통부의 권한은 상업적 우주비행의 발사 및 재돌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발사·작동·재돌입을 제한할 권한<sup>48)</sup>
- 발사 및 재돌입 활동을 모니터할 권한<sup>49)</sup>
- 허가를 수정·철회·유예할 권한<sup>50)</sup>
- 예정된 발사 및 재돌입을 사전에 선점할 권리<sup>51)</sup>
- 발사의 금지·유예·중단, 발사장 및 재돌입 부지의 운영 그리고 재돌입<sup>52)</sup>

47) The branch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Chapter 509 i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The current regulations to carry out Chapter 509 can be found at 14 C.F.R. Chapter III. Parts § 415, 431 and 435.

48) 51 U.S.C § 50904 Restrictions on launches, operations, and reentries

49) 51 U.S.C § 50907 Monitoring activities

50) 51 U.S.C § 50908 Effective periods, and modifications, suspensions, and revocations, of licenses.

51) 51 U.S.C § 50910 Preemption of scheduled launches or reentries

52) 51 U.S.C § 50909 Prohibition, suspension, and end of launches, operation of launch sites and reentry



- 상업 운영자가 제 3자 책임보험을 획득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재정적 수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권리<sup>53)</sup>
-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서 시행 중인 조약·협약·협정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와 일치하는 본 장을 수행하도록 타국과 협의할 권리<sup>54)</sup>
-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립할 권한<sup>55)</sup>

물론 제 509장은 전적으로 규제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발사 허가에 대한 수많은 혜택과 정당한 법 절차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 509장의 실제 효과는 이것이 상업적 우주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연방정부가 우주조약과 그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교통부는 현재 및 미래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허가·유예·금지시키는 권한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상업우주발사법(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sup>56)</sup>

동 법에 따르면 미국영역 내에서의 발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미국영역 외에서의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인이 면허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70104조(a)(1)(2)). 외국 국적의 민간인이라도 미국인이 「지배적 이익」(controlling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외면서 외국의 영역외(공해, 공역 등)에서의 발사와 발사장 운영을 위해 면허를 필요로 한다(동조(3)A). 또한 외국과의 사이에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협정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외국국적의 민간인은 미국의 발사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동B(ii)).<sup>57)</sup> 반복적 활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RLV)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1998년에는 우주물체의 귀환도 동 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었다.<sup>58)</sup>

sites, and reentries

53) 51 U.S.C § 50914 Liability insurance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54) 51 U.S.C § 50919 Relationship to other executive agencies, law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55) 51 U.S.C § 50922 Regulations

56) Commercial Space Launching Act, Public Law. 98-575 (30 Oct. 1984) 49 U.S.C. 2601. 그 후 면허부여 기준과 수속에 대한 세칙은 잠정규칙(51 Fed. Reg. 6870 (26 Feb. 1986))을 거쳐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53 Fed. Reg. 110004 (4 April 1988). 또한 동 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1994년에는 법전 재편에 따라 조문 번호가 크게 바뀌었다. 본문에서의 인용은 조문 번호 변경 이후의 것이다.

57) 미국·우크라이나 상업우주발사협정에서는 양국의 기업이 참가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발사에서는 미국의 발사허가를 받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2조 3).

사실 CSLA는 행정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요람기에 있는 상업적 우주 발사산업의 보호는 불충분했다.<sup>59)</sup> NASA가 민간부문의 위성발사까지 담당했던 시절에는 위성소유자가 가입했던 보험액을 넘는 제3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NASA에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었으나, CSLA 아래서는 발사업자가 운수장관이 결정한 금액의 보호한도를 가입하여 보험액을 넘는 제3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이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때문에 공적 부문에서 막대한 보조를 받아 발사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유럽이나 중국에 가격경쟁력면에서 당해낼 수 없다는 미국산업계의 원성이 높아졌고, 1988년 일정 금액 이상의 제3자 손해보상을 정부가 떠맡아 정부재산에의 보상을 경감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sup>60)</sup>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에 대해서는 5억 달러까지의 보험가입의무(CSLA 70112조(a)(3)(i))를 지우고,<sup>61)</sup> 발사장과 그 직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재산의 손실·손해에 대해서는 1억 달러까지의 보험가입의무(CSLA 70112조(a)(3)(ii))로 족하게 되었다. 5억 달러를 넘는 제3자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15억 달러까지 보충할 수 있다(CSLA 70113조).<sup>62)</sup> 또한 NASA나 공군이 민간기업의 위성발사를 위탁받아 시행했던 시절의 리스크분산 관행을 이어받아 CSLA에서는 발사서비스에 관여하는 자의 계약상대, 하청계약자, 고객, 해당 고객의 계약상대나 하청계약자 간에 청구의 상호포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면허 발급요건이었다(CSLA 70112조(b)).<sup>63)</sup>

## 2. 유럽법의 검토

유럽의 경우는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1996년 우주의 상업적 활용, 우주시장 및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1998년 EU이사회와 ESA가 공동으로 채택한 EU의 우주정책인 'ESA와 유럽공동체간 협력강

58)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Public Law 105-303 (28 Oct. 1998) [H.R.1702], sec. 102.

59) Handberg, Roger B. & Joan Johnson-Freese, *The Prestige Trap*, 1994., pp.155-167.

Gump, David P., *Space Enterprise beyond NASA*, 1990, p.39.

60) Bender, R., *Space Transport Liability : National and International Aspects*, 1995, pp.207-217

61) 조홍제,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1, p.282.

62) 제3자 손해가 15억 달러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CSLA가 규정하고 있지 않다.

63) 단, *Martin Marietta v. INTELSAT* 사건의 제1심 판결(1991년)에서 계약서에 명확히 상호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1988년 개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형적으로 상호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Martin Marietta v. INTELSAT*, 763 F. Supp. 1327 (1991), cited in Gorove, Stephen, *Cases on Space law*, 1996, pp.59-60.

화를 위한 결의'에서 상업적 이용체제가 본격화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지구관측, 항행, 위성통신, 유인우주비행, 미세중력, 발사체 서비스 등 우주프로그램의 수행과 진과할당 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EC와 ESA간에 기본 협정이 체결되었다.<sup>64)</sup> 나아가 2007년에는 17개 ESA회원국과 27개 EU회원국이 공동으로 '유럽우주정책 결의'를 채택하여 이제 개별국가 차원에서 벗어나 유럽전체를 위한 우주활동의 기본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국에는 상업우주발사법같은 것이 따로 없고 로켓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유럽 각국이 아리안 로켓의 생산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한 아리안 스페이스 선언<sup>65)</sup>, 유럽우주기구(ESA)와 아리안 스페이스사간의 협정<sup>66)</sup>, 기아나우주센터의 이용에 관한 프랑스와 ESA의 협정 등의 문서를 통해 처리된다. 발사국으로서 프랑스가 제3자 손해에 대해 무과실의 완전배상책임을 지는데, 후에 프랑스가 아리안 스페이스사에 5억 프랑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67)</sup> 발사에 필요한 제3자 보험가입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로서 아리안 로켓의 발사에 허가를 부여하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가 관여한다.<sup>68)</sup>

### 3. 러시아 「연방우주활동법」<sup>69)</sup>

러시아의 우주사업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편성된 예산은 약1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우주발사체 개발, 달과 화성 등의 천체 탐사, ISS, 실용적 위성항법체제인 GLONASS의 구축 등<sup>70)</sup>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러시아는 유인 우주 비행을 주요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미 상업적 우주관광 사업을 통해

64) 박원화·정영진, 「우주법」(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p.39.

65) Declaration by Certain European Governments Relating to the Ariane Launcher Production Phase, done 14 Jan. 1980, entered into force 15 Oct. 1981 ; cited in 6 Annals Air & Space L. 1981, pp.723-737. (revised in 1992)

66) Convention between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Arianespace, (signed 24 Sept. 1992).

67) 아리안 스페이스 선언 3조 (9) 및 4조 (1). 1980년 선언에서는 아리안 스페이스사가 책임지는 상한이 4억 프랑이었다.

68) 90년대 상업적 우주이용 국제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발사업체는 아리안으로 90년대 시장점유율 38%, 민간위성발사에 한하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日本宇宙開發事業団, 「宇宙開發 Databook 2000」, 日本宇宙Forum(2000년), p.167.

69)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pace Activities, (20 Aug. 1993), No. 5663-1, effective 6 Oct. 1993. A/AC.105/C.2/L.224 (22 Jan. 2001) paras.

70) 박원화·정영진, op.cit.,2012, p. 130.

각각 2000만 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민간인 7명을 ISS에 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우주활동에는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동법 제2조(1))을 넓게 포함하여 우주통신, 원격탐사, 우주제조업뿐 아니라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이나 보험문제를 포함하여 우주연구나 우주기술의 지원에 의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까지를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는 연방우주활동법의 뒷받침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제2조(1)(2)).<sup>71)</sup> 이렇듯 우주활동을 넓게 파악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사업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기기 및 이러한 것들에 관한 기술의 이전, 수출관리, 우주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규칙, 외국인 재산의 보호, 지적소유권 문제 등까지도 러시아의 연방 우주활동법에서 개괄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주의 이용에 있어 면허취득이 요구되는 활동은 우주물체의 실험, 제조, 보관, 발사준비, 발사 및 우주비행관리에 한정되며(제9조 1항), 장소에 상관없이 러시아의 또는 러시아 관할하에서의 외국인의 해당 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면허의 취득이 활동의 전제요건이 된다. 러시아에는 동 법 이외에도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상업우주활동법(1997)」, 「우주산업분야의 국가정책이행에 관한 법령(1998)」 등 다수의 관계법규가 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러시아우주청으로부터 별개의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이 분리 설치되었는데 동 기관의 활동과 더불어 「우주활동에 관한 우크라이나법」이 제정되었다(1996년). 우주활동에 관한 우크라이나법도 ‘우주활동’을 우주의 과학조사, 우주기술의 설계와 응용 및 우주공간의 이용으로 다소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1조). 또한 동 법에 의하면 국가우주기관이 우크라이나 영역내 및 동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는 국외에서의 우주활동 중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이후 각의에 의해 책정되는 면허절차에 의해 결정된다)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10조).<sup>72)</sup>

#### 4. 일본의 「우주기본법」

일본은 우주를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여 국가 전략으로서 우주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우주정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산업 창출, 우주외교를

71) 조흥제, *op. cit.*, 2011, p.289.

72) A/AC.105/C.2/L.224 (22 Jan. 2001), paras. 47-55.

통한 협력 국가의 확대 및 국내 우주 산업체의 해외 진출 그리고 최첨단 과학 및 기술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회사인 SEED PLANNING사는 우주 상업화관련 비즈니스의 일본 및 해외 동향, 일본국내 우주관련 기술의 시장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우주 비즈니스는 지금까지의 우주기술 연구개발에서 앞으로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국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2007년 8월의 ‘지리 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과 2008년 8월 ‘우주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일본 우주개발은 연구개발 위주에서 우주의 상업적 이용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73)</sup> 일본의 우주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활동에 관계되는 조약 기타의 규제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법제의 정비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자국 이익의 증진 특히 민간에 있어서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sup>74)</sup>

일본에 있어 우주기본법의 제정, 시행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 연구, 개발에서 실용적 수요에 부응하여 우주산업화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통일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주개발을 종합적이며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이런 우주의 상업적 이용은 2005년 12월 자민당의 우주관련 기술검토회가 발족할 당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한국의 「우주개발 진흥법」 및 「우주손해 배상법」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주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관련 국내 입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시행되고 있는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73) <http://www.seedplanning.co.jp/press/2009/2009121002.html>

74) 日本 宇宙基本法, 第35條.

목적을 두고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위한 위성의 발사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우주손해 배상법’도 제정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동 법은 우주활동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규정하여 우주개발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sup>75)</sup> 이들 법률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개정을 요하는 부분도 다수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도 이제 이런 장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통해 상업적 우주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춘 셈이다.

## V. 평가와 전망

우주의 상업적 이용분야는 지난 수십년사이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76)</sup>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 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75) 이들 국내법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논문 참조.

이강빈,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0, pp.133-145.

76) Outer Space Treaty, Art.,1.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sup>77)</sup> 현재 우주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우주법규범이 아직 형성 중에 있다는 현실로 인해 실제적인 운용면에서는 국가간의 관행이나 계약 그리고 국내법의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주의 상업적 활동가운데 대표적으로 앞서 본 발사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주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을 제외하면 계약당사자가 그들 의사에 의거하여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발사서비스제공자는 상호책임 면제조항 등을 빌미로 발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말하자면 결과에 대한 의무가 아닌 수단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sup>78)</sup> 현재와 같이 일부 우주 선진국의 국내법이나 계약관행으로 상업활동이 규율되는 경우에는 나로호 발사과정에서 보았듯이 우주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호혜적인 합의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주요 상업적 우주이용 분야에서 법규범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지적재산권 분야, 위성통신 및 발사체의 우주보험의 문제, 우주여행을 포함한 우주운송사업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가 인간의 생활영역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바 이제는 우주법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해야할 단계에 와 있고 현재 이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공법적인 특성을 지닌 우주국제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사항이외에 당사자의 발사계약에 의거한 상업적 우주발사분야의 규칙과 관행이 성립되어 가는 중이고, 그외 지역적인 우주활동 혹은 우주통신, 제조업, 우주운송이나 여행 등 다양한 이용분야에 관한 특별법규칙도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럽이사회에서 2008년 제안한 바 있는 '우주활동을 위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은 국가의 우주활동 수행 중에 다른 인공위성에 피해를 입히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우주통신을 방해하는 행동을 피하고, 또한 궤도 폐기물 생성의 억제를 요구하는 등 상업적 우주활동에 적용가능한 국제합의의 하나의 본보기

77) 김종복,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pp.161-162.

78) 신성환, "우주사고와 책임문제", 「국제법 동향과 실무」, 외교통상부, Vol.8, No. 3·4, p.34.

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79)</sup> 지금도 이것은 UN에서 다자간 협상의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범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현 시점에서 수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규범 모델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요컨대 이제는 발사계약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분야의 우주활동의 상업화, 민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우주활동전체를 공적 서비스로만 보아 왔던 기존의 우주법체계를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국제사회가 상업적 우주활동에 관한 우주경제법규칙의 작성이나 법형성 과정에 있어서 보다 통합적인 어프로치(예를 들면 우주관련 민간기업이나 NGO를 자문베이스로 COPUOS에 참가시키고 혹은 WTO, WIPO, ICAO, INTELSAT, INMARSAT, IMO 등의 기관과 관련분야에서 제휴하여 법규칙의 형성에 이르는 등)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79) Machael J. Listner, "International space law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e rules do apply", *The Space Review*, June 2013, p.9.



## 참고문헌

- 신성환, “우주사고와 책임문제”, 『국제법 동향과 실무』, 외교통상부, Vol.8, No. 3·4.
- 이강빈,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 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0.
- 김종복,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R&D Information, 국가별 주요항공우주프로그램, 2013.
- 문준조,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 青木節子, “宇宙の 商業利用”, 日本と 國際法 100年, 第2卷, 2002.
- 山本草二, “宇宙法における開發概念”, 國際法外交雜誌, 69권 4·5·6호, 1971.
- 山本草二, “宇宙開發”, 未來社會と法, 筑摩書房, 1976.
- 龍澤邦彦 監修 『原典 宇宙法』, 丸善 ブラネット, 1999.
- 龍澤邦彦, 宇宙法 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研究セクター, 2000.
- 山本草二, 宇宙通信의 國際法 -國際企業의 法形態として-, 第1編, 東京, 有信堂, 1991.
- 日本宇宙開發事業団, 『宇宙開發 Databook 2000』, 日本 宇宙Forum, 2000.
- Machael J. Listner, “International space law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e rules do The Space Review”, June 2013.
- Silvestrov, Georgy, “The Notion of Space Commercialization”, 33 Colloquium of International Outer Space, 1990.
- He Qizhi, “Legal Aspects of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15 Annals Air & Space Law, 1990.
- Boeckstiegel, Karl-Heinz, “The Term “Appropriate State” in International Space Law” 37 Colloq. L. Outer Space, 1994.
- Gorove, Stephen, “Liability in Space Law : An Overview”, 8 Annals Air & Space Law, 1983.
- Reijnen, Bess,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in Space - in Europe” 33 Colloq. L. Outer Space, 1990.

- Bourelly, Michel,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29 Colloq. L. Outer Space, 1986.
- Leopold Peyrefitte, "Droit de l'espace", *Precis Dalloz*, 1993.
- H. Batiffol et P. Lagarde, "Droit international prive", 1983, *LGDJ. T. II*.
- P.L.Meridith and G.S.Robinson, "Space Law : A Case Study for the Practioner", Nijhoff.
- Machael J. Listner, "International space law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e rules do apply", *The Space Review*, June 2013.
- Masahiko Sato, "The Japanese Legal Framework; Third Party Liability Resulting from NASDA Launch Activities", *IISL-98-IISL. 2. 05*.
- Dr. I. J. Ph. Diederisks - Verschooor & Dr. V.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3rd rev. ed.), 2008.
- JOCE M. Filho, *Legal Issue of Commecial Space Activities*, United Nations. Ukraine Workshop on Space Law, Nov. 2006.
-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2000.
- National Policy on the Commecial Use of Space, The White House(July 20, 1984).
- Traa-Engelman, H. I. van,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1993.
- Handberg, Roger B. & Joan Johnson-Freese, *The Prestige Trap*, 1994.
- Gump, David P., *Space Enterprise beyond NASA*, 1990.
- Bender, R., *Space Transport Liability : National and International Aspects*, 1995.
- Martin Marietta v. INTELSAT*, 763 F. Supp. 1327 (D. Md. 1991).
- 14 C.F.R. Chapter III. Parts § 415, 431 and 435.
- Commercial Space Launching Act, Public Law. 98-575 (30 Oct. 1984) 49 U.S.C. 2601.
-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Public Law 105-303 (28 Oct. 1998) [H.R.1702], sec. 102.
- Martin Marietta v. INTELSAT*, 763 F. Supp. 1327 (1991).
- Declaration by Certain European Governments Relationg to the Ariane Launcher

Production Phase, done 14 Jan. 1980, entered into force 15 Oct. 1981(revised in 1992);Annals Air & Space L. 1981.

Convention between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Arianspace, (signed 24 Sept. 1992).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pace Activities, (20 Aug. 1993), No. 5663-1, effective 6 Oct. 1993.

A/AC.105/C.2/L.224 (22 Jan. 2001) paras.

A/AC.105/C.2/L.224 (22 Jan. 2001), paras.

Space Activities Act (24 Dec. 1998) No.123.

Outer Space Treaty (1967).

Agreement for the launching into geostationary transfer orbit of satellite by an Ariane launch vehicle,

윤옥해, “아세아우주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법률문제”, www.cnsa.gov.cn.

[http:// webl.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http://webl.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

<http://webl.c2.cyworld.com/myhomepy/board/retrieveBoard.php?home>

<http://www.seedplanning.co.jp/press/2009/2009121002.html>

## 초 록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가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 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

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제어** : 우주조약, 책임협약, 상업적 우주활동, 우주국내법, 우주 행동강령.

## Abstract

###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Lee, Young-Jin\*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are engaged in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by now.

This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the present state of space law.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space law were developed and finalized before this development and thus only provide very few and sometimes unfitting provisions for th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particularly the use by private enterprises.

Law formulated in an era when the word “privatization” had not even been coined cannot contain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For the promo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use, because participants will need this information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in this fie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mak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erce, which is rapidly proliferating and to review the process of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in a few main space advanced countries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project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legal implications of matters such as international commercial launch services, the liability aspects of such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roduct

---

\* Professor of Law School, Chungbook National University.

liability insurance and materials processing could one day will be subject to regulated by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domestic law. In fact, the question of commercializatio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sharing benefits of space activities, and this currently is an agenda item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 COPUOS.

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 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 Besides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Commercial space great promise for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human outer space activities but aspring commercial actors must recognize that foreign policy, as well a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nsure tha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will not operate in a legal and regulatory vacuum.

As commercial space matures the law and accompanying regulation will most certainly evolve and choose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evitable evolution of law and regulation.

**Key Words :** outer space treaty, liability conventio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domestic space law, Code of Conduct for Space Activities